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 4. 12(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3. 23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3. 23
- 라. 상정일자 : 2010. 4. 6.(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신설되는 위임사무 : 11건】

- ◆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8건)

-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과 등 부서별로 각각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각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보건정책과, 대기보전과 (2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한 사무”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추가·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도로과 (1건)

-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사무를 “차량의 통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정함.

**【변경되는 위임사무 : 38건】**

◆ 교육지원담당관실 (1건)

-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개정함.

◆ 회계계약심사과 (3건)

- 시유일반재산 매각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는 매각가액 범위 없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함.

◆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 (34건)

-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 및 위임사무명을 정비함.

### 【삭제되는 위임사무 : 21건】

- ◆ 위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16건)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권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가스충전 사업에 관한 권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업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방치선박 등의 제거” 사무가 군수·구청장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각각 삭제함.
- ◆ 보건정책과 (5건)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수의 신고” 사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소관 부서 내 사무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3건】

- ◆ 교통관리과(삭제) ⇒ 대중교통과(신설)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와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각각 조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개정안은

-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 법규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

-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군수·구청장 등에게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 개정 내용

### ○ 신설되는 위임사무는

- (안 4쪽, 6쪽)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주무과인 사회복지봉사과로 통일하여 위임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본 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각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 (안 8쪽, 9쪽) 보건정책과의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개정과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이며,  
대기보전과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의 위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개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7쪽, 8쪽) 도로과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사무와 종합건설본부의 “과적차량 단속” 사무를 일원화하여 도로관리 효율성을 제고코자 도로과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유지보수·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여건 및 관리 계획에 의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로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타 광역시 운영사례 >

구 분		제한차량 운행허가	과 적 단 속	전담 행정인력	시행부서
시 별					
인천	시청	○	×	허가-2명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	○	단속-21명	도로관리팀
부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	허가-4명 단속-20명	관리과
대구	건설관리본부	○	○	허가-2명 단속-11명	시설안전과
대전	건설관리본부	○	○	허가-1명 단속-2명(공약10명)	시설관리과
울산	종합건설본부	○	○	허가-1명	시설과
	5개 군, 구	○	○	허가-군,구별 각1명 단속-군,구별 각1명	건설과
광주	종합건설본부	○	○	허가-1명 단속-10명	관리과

○ 변경·삭제 및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는

- (안 제7쪽) 직속기관장으로의 위임사무중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 사항」은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변경하는 것임.
- (안 제4쪽, 6쪽, 8쪽) 회계계약심사과의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처분 관련 사항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처분 매각가액을 상향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산처분 위임권을 군·구·경제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 및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업무가 교통관리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조정되어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임.

## □ 이번 조례 개정은

- 행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 등은 불가피하게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위임사무를 군·구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 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수행가능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위임사무가 예산이 수반되는지?
  - 위임된 조례의 업무가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 답 변 >

-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음.
  - 조직개편, 사무위임조례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하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4명)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복지봉사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노인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별표 1 중 여성정책과란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

별표 1 중 아동청소년과란의 제4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아동청소년과란)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

별표 1 중 노인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보건정책과란 및 위생정책과란을 각각 보건정책과란, 위생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및 노인정책과란으로 한다.



별표 1 중 위생정책과란을 삭제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p> <p>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제28조</p>	
---	---	--	--

별표 1 중 에너지정책과란의 제3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p> <p>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p> <p>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p> <p>같은 법 제78조</p>	
---	--	--	--

별표 1 중 교통기획과란 및 대중교통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교통관리과란의 제16호란을 삭제하며, 도로과란의 제1호 과목의 근거 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p> <p>나.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p>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p>	
---	--	--	--

별표 1 중 항만공항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해양수산과란의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복지봉사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노인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별표 2 중 아동청소년과란 앞에 여성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아동청소년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아동청소년과란)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

별표 2 중 노인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보건정책과란 및 위생정책과란을 각각 보건정책과란, 위생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및 노인정책과란으로 한다.

별표 2 중 위생정책과란을 삭제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	--	---	--

별표 2 중 에너지정책과란의 제3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p>	
---	---	--	--

별표 2 중 대중교통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교통관리과란의 제1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도로과란의 제1호 과목 및 제4호 사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p>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p>	
---	---	---	--

별표 2 중 항만공항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해양수산과란의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성과별란 중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하고, 도로과란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란(도

로과란)의 제1호란의 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도로과란)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도로폭원에 관계없음)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종합건설 본부장
---	--	---	-------------

별표 5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의 제2호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	

별표 5 중 보건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5호 다목의 “인·허가등의 재제”를 “인가·허가등의 의제”로 하며, 에너지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5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8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92조

별표 5 중 도로과란 제1호란의 타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의 제10호

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환경정책과란)의 제17호란의 가목의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제4항”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1	<p>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업자통지  라. 초안공고시 설명회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p>
---	---	--

별표 5 중 대기보전과란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p>「소음·진동규제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이행보고 및 확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청문  마. 과태료</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60조</p>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회계계약 심사과	1	<p>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p> <p>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p> <p>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p> <p>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제8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p>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교 통 기획과	1	<p>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부과 및 징수</p> <p>나. 가산금 부과 및 징수</p> <p>다. 각종대장 기록관리</p>	<p>「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8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p>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p> <p>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p> <p>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p> <p>라. 시설사용료의 인가</p> <p>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p> <p>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p> <p>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p> <p>아. 터미널 사용명령</p> <p>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p> <p>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p> <p>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p> <p>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p> <p>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79조</p> <p>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p>	
	2	<p>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p> <p>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p> <p>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94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항만공항 정 책 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 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별표 2]

##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회계계약 심사과	1	<p>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p> <p>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p> <p>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p> <p>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p> <p>부터 제43조까지</p> <p>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p> <p>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p> <p>까지, 제81조, 제8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6조,</p> <p>제29조부터 제36조까지,</p> <p>제81조</p>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여성 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p>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p> <p>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p> <p>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 신고</p> <p>라. 시설사용료의 인가</p> <p>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p> <p>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p> <p>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p> <p>아. 터미널 사용명령</p> <p>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p> <p>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p> <p>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p> <p>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p> <p>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79조</p> <p>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p>	
	2	<p>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p> <p>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p> <p>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94조</p>	
	3	<p>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보고 검사</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항만공항 정 책 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별표 5]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 지도와 명령 마.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바. 의료지도원 임명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2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라. 의료법인 설립등기 등의 보고 마.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바.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사. 재산의 증가보고 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자.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차. 해산신고	「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 책 과	3	<p>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p> <p>나.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p> <p>다. 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p> <p>라. 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p> <p>마.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사용중지 등의 사무</p>	<p>「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p> <p>같은 규칙 제4조</p> <p>같은 규칙 제2조</p> <p>같은 규칙 제4조</p> <p>같은 규칙 제4조제3항</p>	
	4	<p>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한약업사의 허가</p> <p>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p> <p>다.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p> <p>라. 허가증의 갱신</p> <p>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p> <p>바. 폐업 등의 신고</p> <p>사.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p>	<p>「약사법」 제45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약사법」 제50조</p>	
	5	<p>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설 등록</p> <p>나. 폐업 등의 신고</p> <p>다. 의약품 조제 승인</p> <p>라. 약국제제의 제조신고</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p> <p>「약사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2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41조</p>	
	6	<p>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고와 검사</p> <p>나. 업무개시명령 등</p> <p>다. 폐기명령 등</p> <p>라. 회수 등 사실공표</p> <p>마. 검사명령</p>	<p>「약사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1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3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책과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아. 청문 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7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바. 응급의료 대불비용 보조 사. 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 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카. 당직의료기관 지정 타.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파. 구급차 말소·등록 하. 구급차 지도감독 거.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너. 이송업 휴업 등 신고 더.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러. 영업정지 등 머. 청문 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8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책과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무능력 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사.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 관리자 제외)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 서. 과태료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계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동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 제81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 까지, 제81조		회계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미만인 재산 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정 비구역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자구수정
<신 설>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노인 정책과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나. 무연고 시체의 처리 다. 무연분묘의 처리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마.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바. 시설묘지·시설 화장장 ·시설납골시설 설 치자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 징금 처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30조		----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자구수정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2	시설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묘지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나.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신고 다.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의 폐지 등 라.이전 및 허가 취소 등 의 조치 마.검사와 보고 바.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료 신고	동법 제14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21조							
		<신 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신 설>			여성 정책과	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아 동 청소년과	4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장료·이용료의 징수 승인  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장	「아동복지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신 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위 생 정책과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기 업 지원과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다. 관리주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  동법 제18조 제2항 동법 제21조 제2항제3호 동법 제28조	----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에너지 정책과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 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차.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제3호 동법 제38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9조제3항 동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30조 동법 제12조제2항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접수 나. 검사대상기기종중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다.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라.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 제100조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종중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관련법 개정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나.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제2항				<삭 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교통기획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부과 및 징수 나.가산금 부과징수 다.각종대장 기록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교통기획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부과 및 징수 나.가산금 부과 및 징수 다.각종 대장 기록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관련법 개정
대중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정처분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또는 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9조, 제83조, 제85조		대중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또는 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2	<u>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u> <u>같은 법 제83조</u> <u>같은 법 제94조</u>		부서간 업무조정
교통관리과	16	<u>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권한</u>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u> <u>같은 법 제74조</u> <u>같은 법 제85조</u>	----- -----			<삭 제>			부서간 업무조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하인 도로 (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타. (생략) 파.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하.~도. (생략)	(생략) <u>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u> (생략)	----- ----- ----- ----- ----- ----- ----- ----- ----- -----			가.~타. (현행과 같음) 파.----- 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 법 시행령 제29조</u>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체육진흥과	1	<u>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u>	<u>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u> <u>동법시행령 제17조</u>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환경정책과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검사유예 및 검사명령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다.과태료 부과 징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법 정비
항만공항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39조		항만공항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관련법 개정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 나.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 나.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2항, 제45조제3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해양수산과	5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	<삭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계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37 조 부터 제43조까지 동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 제81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 까지, 제81조		회계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미만인 재산 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정 비구역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자구수정
<신 설>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노인 정책과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나. 무연고 시체의 처리 다. 무연분묘의 처리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마.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바. 사설묘지·사설 화장장 · 사설납골시설 설 치자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 징금 처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30조		----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자구수정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2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설묘지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나.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신고 다.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폐지 등 라.이전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 마.검사와 보고 바.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료 신고	동법 제14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21조							
		<신 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신 설>			여성 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아동 청소년과	2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입장료·이용료의 징 수 승인 나.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한	「아동복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신 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위생 정책과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기업 지원과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나.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다.관리주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 라.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제4항 동법 제18조 제2항 동법 제21조 제2항제3호 동법 제28조	----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에너지 정책과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 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차.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제3호 동법 제38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9조제3항 동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30조 동법 제12조제2항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접수 나.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다.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라.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 제100조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관련법 개정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나.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 제2항				<삭 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9조, 제83조, 제85조		대 중 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		관련법 개정
		자.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							
				자.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				2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가용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3				부서관 업무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교통 관리과	1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1조,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4조		----		<삭 제>			부서간 업무조정
	8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권한 가.유상운송허가 및 입대허가 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7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7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85조				<삭 제>			부서간 업무조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하인 도로 (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타. (생략) 파.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하.~도. (생략)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	--	----- ----- ----- ----- ----- ----- ----- ----- 가.~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 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4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바. (생략) 사.도로공사계획의 공고 아.~저. (생략)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	----- ----- -----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 아.~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체육 진흥과	1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환경 정책과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 기간의 연장·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다.과태료 부과 징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 기간의 연장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법 정비
항만 공항 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39조		항만 공항 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관련법 개정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44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1조			
해양 수산과	5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기획담당관실	1	(생략)	(생략)	(생략)	교육지원담당관실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20m를 초과하는 도로(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나. (생략) 다.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라.~자. (생략) 차.차량의 통행 제한(과적차량 단속)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같은법 제59조	중합건설본부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라.~자. (현행과 같음) 차. <삭 제>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현행과 같음) <삭 제>	---	관련법 개정  7호사무로 통합
	2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강화, 용진 제외) 가.~나. (생략) 다.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라.~자. (생략)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중합건설본부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라.~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현행과 같음)	---	관련법 개정
		<신 설>			7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도로폭원에 관계없음)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중합건설본부		사무의 일괄처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계 계약 심사과	2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바. (생략) 사.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생략) 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생략)		----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일반재산의 매각 1)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미만인 재 산의 최종처분결정권 을 제외한 처분관련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공시지가 상승에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보건 정책과	1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와 검사  나.업무개시명령 등 다.폐기명령 등 라.검사명령 마.개수명령 바.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사.청문 아.과징금 처분 자.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나.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다.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지도와 명령 마.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바.의료지도원 임명 사.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관련법 개정 (경제자 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 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2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 제45조							
	3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의료법」 제48조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나.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라.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보 건 정책과		마.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같은법 제18조		보 건 정책과	2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바.응급의료 대비비용보조	같은법 제22조				가.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사.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	같은법 제22조의2				나.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법 제26조				다.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자.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법 제29조				라.의료법인 설립등기의 보고			
		차.당직의료기관 지정	같은법 제34조				마.재산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카.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같은법 제35조				바.임원 선임의 보고 등			
		타.응급차 말소·등록	같은법 제45조				사.재산의 증가보고			
		파.응급차 지도감독	같은법 제50조				아.기본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하.영업정지 등	같은법 제55조				자.법인사무의 검사·감독			
		기.청문	같은법 제56조				차.해산신고			
		너.과징금 부과징수	같은법 제57조							
		더.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62조							
		러.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같은법 제51조							
		며.이송업 휴업 등 신고	같은법 제53조							
버.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같은법 제54조									
6	의약품도매상에 관한 사항	-			3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가.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				
	나.허가사항등의 변경 허가 신청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나.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				
	다.폐업등의 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다.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				
						라.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				
						마.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사용중지 등의사무				
7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의료법」 제33조				가.한약업사의 허가				
8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가.한약업사의 허가	「약사법」 제45조				다.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나.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다.허가증의 갱신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라.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9	<p>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외해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도매업 제외)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 자적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 처분</p>	<p>「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6조제2항 같은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p>			5	<p>라. 허가증의 갱신 마. 허가사항 등의 변경 허가 신청 등 바. 폐업 등의 신고 사.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p>	<p>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약사법」 제50조</p>		<p>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p>	
						6	<p>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나. 업무개시명령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회수 등 사실공표 마. 검사명령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아. 청문 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약사법」 제69조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p>			
						7	<p>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바. 응급의료 대불비용 보조 사. 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2조의2</p>			
	10	<p>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 나.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 다. 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p>	<p>「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2조</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라. 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	같은 규칙 제4조				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 법 제26조		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 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마.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사무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 법 제29조			
	11	의료지도원 임명 등	「의료법」 제69조			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카. 당직의료기관 지정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12	약사감시원 임명 등	「약사법」 제78조			타.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파. 구급차 말소·등록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5조제2항			
						하. 구급차 지도감독 거.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너. 이송업 휴업 등 신고 더.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리. 영업정지 등 미. 청문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8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같은 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마약류 관리자 제외)	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같은 법 제26조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 약류 인계인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같은 법 제40조			
						거.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더.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미. 청문	같은 법 제45조			
						버.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서.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기업지원과	5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다.인·허가등의 재제 라.~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인가·허가 등의 의제 라.~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에너지정책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권한 가.허가 및 변경허가 나.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다.허가취소 등의 처분 라.과징금의 부과·징수 마.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바.안전관리자의 채용·해임 신고 수리 사.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명령 아.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허가관청 등의 조치 차.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카.보고와 조사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38조		-----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접수 나.검사대상기기종중자의 선입기간 연기승인 다.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칭 및 검사 라.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 제100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검사대상기기종중자의 선입기간 연기승인 나.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칭 및 검사 다.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관련법 개정
	8	「전기사업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공용 토지의 사용 허가 나.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다.타인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92조 동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제2항		8	공공용 토지의 사용 허가	「전기사업법」 제92조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도로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카. (생략) 타.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파.~도. (생략)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	-----	가.~카. (현행과 같음) 타.----- ----- 파.~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체육진흥과	10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환경정책과	1	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평가서 초안의 접수 나.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 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의견 접수 및 제출 사.사업자통지 라.초안공고시 설명회 개최사항 포함 요청수리 마.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6항		----- -----	1	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평가서초안의 접수 나.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의견 접수 및 제출 사.사업자통지 라.초안공고시 설명회 개최 사항 포함 요청수리 마.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관련법 개정
	1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부과·징수 나.~바.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제4항 (생략)			----- ----- -----	가.----- 나.~바. (현행과 같음)	「환경·식물보호법」 제73조제4항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대기보전과			<신 설>		----- -----	9	「소음·진동규제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나.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이행보고 및 확인 다.보고와 검사 등 라.청문 마.과태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같은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60조		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